[표지]

인증/면제기기

- 관련규정 해설
- 주요Q&A

◈ 관련법령 ◈

1 형식승인 대상기기

❍「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①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서규정(형식승인 면제대상) 생략 -

②형식승인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3조제1항**

①「전기통신기본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기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기자재
   가. 형식승인 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을 제외한다)
   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
3.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전파법」 제46조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3조제2항

②「전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2와 같다.

③「전파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는 별표3과 같다.

[별표 2]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1. 선박에 설치하는 경보자동수신기
2. 선박에 비치하는 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기기
3. 선박국용 무선방위측정기
4. 「전파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5. 경보자동전화장치
6.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7.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 또는 항공이동업무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8.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다 및 그에 부가하여 설치하는 자동레이다푸롯팅장치
9.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양방향무선전화장치
10.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기
11.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12. 디지털선택호출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을 행하는 해상이동업무용 무선국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13.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
14. 네비텍스수신기
15. 수색구조용 레이다트랜스폰더의 기기
16.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17.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별표 3]

형식등록을 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1.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3. 기상원조국에 사용하는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4. 라디오부이의 기기
5. F3E 및 G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형식검정 대상기기를 제외한다)
6.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7.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8.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9.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0. 900㎒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11.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12. (삭제)
13.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4.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기기
15.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16.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17.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를 제외한다)
1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19.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20.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1.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22.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은 용도 및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 형식검정 : 선박, 항공기 등에 설치하는 인명안전 관련 무선기기
- 형식등록 : 형식검정을 제외한 무선기기

3 정보기기 전자파적합등록

❍「전파법」 제57조제1항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및 각호 생략)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3조제4항

④「전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제명 수정요망)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전파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를 제외한다)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기기(「전파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3. 방송수신기기류 : 9kHz부터 1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전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기를 제외한다)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휴대용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전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기를 제외한다)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전파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기를 제외한다)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7. 정보기기류 :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8. 고속철도기기류 : 고속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고속철도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9.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를 제외한다)

◈ 관련 Q&A ◈

질의 1 복합기기 인증대상 및 종류

출 처	홈페이지 Q&A(2006.6.12)
질의요지	입·출력단자가 있는 Gateway의 인증대상 및 조건

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 웹상에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음성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Gateway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Gateway는 소형 PC처럼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만 깔려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embedded window로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입력은 RJ45 cable로 연결되며, 출력은 RJ11 cable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아야 된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기준이나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Gateway는「전기통신 기본법」제33조에 의한 형식승인과「전파법」제57조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 등 2종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복합인증 대상기기입니다. 복합인증도 해당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를 마치면 2종의 인증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형식승인과 관련된 기술기준·시험방법은 정보통신부령인「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전자파적합등록과 관련된 기술기준·시험방법은「전파법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한 「전자파보호기준」및「전자파장해방지기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나 원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rl.go.kr)의 상담/참여⇒법령정보에, 세부 인증절차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IT품질인증⇒정보통신기기인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PTV-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PSTN / LAN 단자가 동시에 있는 제품
2. LAN 단자만 있는 제품
1번 제품에서는 전자파적합등록과 유선기기형식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번 제품에서는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아야 하는지, 유선기기형식승인을 함께 받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파연구소 강선영씨에게 문의)
저희 제품은 LAN단자가 있기는 하지만, 라우터 기능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허브/라우터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제공하며, 그쪽에서 제공하는 최종 LAN선이 저희 제품 LAN단자에 꽂히게 됩니다.
저희 제품은 OS가 설치된 소형컴퓨터라고 보셔도 무방한 제품입니다. (LAN단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는 기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2번 제품)에 유선기기형식승인을 함께 받아야 하는건지, 전자파적합등록만 받아도 되는건지, 전파연구소에서 공식적인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전파연구소 강선영입니다.
귀사가 문의하신 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 1

수고하십니다 무선조정 완구를 전자상거래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승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직접 승인 받으러 가야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자세하면 좋구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관련질의>

- 무전기 신규인증 절차(2006.3.14 Q&A)
-

답변내용

무선조정용 완구는 형식등록인증 대상기기입니다.
인증을 받으시려면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먼저 받으신 후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설명서, 종합계통도, 회로도, 외관도, 부품배치도, 부품명세서, 규격표 등을 첨부하셔서 www.emic.go.kr에서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정시험기관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l.go.kr)의 지정시험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비용은 지정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수수료는 93,000원입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P-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이 EK인증 대상인지, MIC인증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제품설명:
LAN 단자 와 AV 단자가 동시에 있는 제품으로, LAN단자를 통하여 비디오스트림을 받아 AV신호를 TV에 송출하는 제품(IP-STB)

2. 산자부 문의 결과
"TV에 AV신호를 송출하는 오디오/비디오기기에 해당됨으로 EK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문의사항
가. EK인증 대상인지, MIC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인지요?

나. EK인증대상이면 MIC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반대로, MIC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면 EK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파연구소의 공식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가. 일단 컴퓨터에 연결되어 (USB, RS-232, DVI단자, PS-2 등)
데이터(제어신호 등 포함)를 받거나 보내게 되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또한,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직접 연결된다면 형식승인대상기기입니다.
참고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구내통신선로설비와 별정통신사업자가 해당역무에
사용하는「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면제됩니다. -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4조 참고
2. 만약 이기기가 1에 해당되면 EK를 받더라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MIC인증을 득하셔야 합니다.

질의 1

중국에서 USB 관련 제품들을 수입하려 합니다.
USB 전화기(스카이프폰)
USB 선풍기
USB 메모리
USB 전등(조명장치)
등을 수입하게 되면 인증절차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준비해야할 관련서류, 비용, 소요기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USB 전화기, USB 메모리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컴퓨터로부터 전원만 공급받는다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USB 선풍기 및 USB 전등이 PC와 연결하여 그 자체로 USB허브역할을 한다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설명서, 계통도, 외관도, 부품배치도를 첨부하여 www.emic.go.kr을 통해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험수수료와 시험기간은 지정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수수료는 74,500원이고 인증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IP-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이 EK인증 대상인지, MIC인증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제품설명:
LAN 단자 와 AV 단자가 동시에 있는 제품으로, LAN단자를 통하여 비디오스트림을 받아 AV신호를 TV에 송출하는 제품(IP-STB)

2. 산자부 문의 결과
"TV에 AV신호를 송출하는 오디오/비디오기기에 해당됨으로 EK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문의사항
가. EK인증 대상인지, MIC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인지요?

나. EK인증대상이면 MIC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반대로, MIC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이면 EK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상기 문의사항에 대하여 전파연구소의 공식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면 「전파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면제대상이 됩니다.

- 형식승인 대상여부 확 인 요-

질의 1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전자파적합등록(MIC)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산자부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프린터)에 ek인증마크를 표시하면 MIC인증이 면제되는지요?

즉, 산자부의 안전인증을 받은 프린터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면 MIC등록도 면제되고 기타 MIC와 관련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내용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면 「전파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면제대상이 되나, 형식승인, 형식등록 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은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질의 1

무전기 인증서의 내용중 제조국을 표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1) 외국에서 반제품(PCB ass'y,기구부품)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는 경우
제조국을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요?
2) 본체는 완제품상태로 수입하고 부대품인 충전기나 이어폰등은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포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 제조국을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요?
* 상기 1),2)의 경우 해당국과 한국으로 병기하는것인지요?
3) 그리고 2)의 경우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한국산 부대품이
포함되었을을 입증하는 서류로 어떤것들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인증신청자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인지요?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011-419-****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완제품을 제조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기에 대한 인증이므로 제조국은 수입국입니다. 병기 불가합니다.

3) 제품의 주요기능을 결정하는 본체(완성품)가 외국제품이므로 제조국을 한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컴퓨터를 제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의 경우 90%이상의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으나 간혹 납기 등의 사유로 일부 컴퓨터 생산을 국내에 있는 외주업체에 외주생산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의 매체광고에 제조원 표기 시 당사 단독명으로 제조원(제조자)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컴퓨터에 붙게되는 라벨(스티커) 등에 제조원(제조자) 표기부착 시 위와 마찬가지로 당사 단독명으로 출력하여 부착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위의 1,2번 질의내용이 적법한 표시, 부착기준이 아니라면 외주생산된 컴퓨터는 외주생산업체의 업체명 표기가 되어야 맞는것인지요?)
3. 제조원(제조자)표기의무와 관련된 법 또는 시행령 등은 어느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인지요?
4. 표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최대한 답변주시기 수월하게 기재하고자 하였으나 장황하게 드린 것 같기도 하여 죄송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한 내용에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1. “제조자”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하여 기기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기의 설계·제조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2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제조자를 허완석님의 회사명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위와 마찬가지 내용이며 인증받은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2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별표7] 인증표시 표시방법 참고바랍니다.
4.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별표8]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기기에 인증표시를 허위로 한 때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인증취소에 해당합니다.

질의 1

중국에서 베이비 모니터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인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카메라와 작은 모니터가 무선으로 되어 있어 옆방에 잠자는 아기가 잘 있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된 제품입니다.

1. 이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2. 어디서 인증 시험을 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인지?
3. 인증기간과 인증유효기간은?
4. 모델별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요?
5. 충전기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6. 어댑터도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7. 충전용 건전지도 인증을 받아야되는지?
8. 샘플은 몇개를 제공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전파를 송신하는 기기는 형식등록 인증대상입니다.

1.~3.

4. 인증수수료는 93,000원이며 시험비용 및 시험기간은 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지방세인 면허세를 해당 시·구청에 내셔야합니다.
5. 인증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입니다.
6. 인증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최초 인증시와 다르게 회로 등이 변경될 경우 재시험하여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7. 인증은 모델별로 받아야 합니다.

8~10. 충전기와 아답터는 MIC인증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받은 아답터를 제품과 같이 판매하시려면 시험을 할 때 같이 시험을 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저는 424MHz대 비허가 소출력무선기기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송신장치와 수신장치가 별도로 되어있을 경우 송신장치는 당연히 전파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수신장치는 어떻습니까?
전파를 발사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어떤지 모르겠읍니다.
이에 대한 전파법규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답변내용

MIC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전파를 송신하는 기기입니다. 수신기가 수신만 한다면 형식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PC 등에 연결하여 수신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 1

해외에서 구입하여(정식 통관을 거쳐)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에 부속품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이미 FCC, IC, Europe, RoHS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듯한데 MIC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MI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FCC: OUR-XBEE2 IC: 4214A-XBEE2 Europe: ETSI RoHS: Compliant 이러한 경우 해당 RF모듈 부품에 대하여 MIC인증을 따로 받아야합니까? 받아야한다면 비용이나 방법등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MIC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나요? MaxStream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정 없이 내부 부속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

RF모듈을 따로 판매하지 않고 구성품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완제품을 판매하신다면 완제품을 인증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련된 기술기준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l.go.kr)→무선기기(25번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설명서, 계통도, 외관도, 회로도, 부품배치도, 부품리스트를 첨부하여 www.emic.go.kr을 통해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기관(http://www.rrl.go.kr/approval/testing/status/list.jsp)과 시험을 진행하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수수료는 93,000원이며 시험비용 및 시험기간은 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지방세인 면허세를 해당 시·구청에 내셔야합니다. 인증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입니다.

질의 1

전화기용 4단자 커넥터가 2001.12.31일부로 형식승인 대상기기에서 폐지된 후에도 2002년 이전에 인증을 취득한 4단자커넥터 한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인증 받지 않은 4단자 커넥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일부 전화기업체가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4단자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말장치 기술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제제 방법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련질의>

- 4단자 플러그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일자(2006.4.12/Q&A)

답변내용

알고 계시듯 전화기용 4단자 커넥터는 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8호(단말장치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부터 형식승인 대상기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4단자 커넥터는 인증이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KT네트웍스의 조광현 주임연구원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없는 제품(기존은 아날로그 지원만 함)으로 위성 디지털 공시청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각종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성 공청 장비 / 디지털방송장비로써 상용화하기 위한 인증
- 프로모션 차원에서 제품의 안정성/신뢰성/품질 등 을 위한 인증

등 그러나 본 IPMG 장비는 신규제품 이기때문에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PMG는 디지털/아날로그 위성신호를 수신받아서 (QPSK) 신호를 복조하고, 8VSB신호로 변조하여 RF 전송합니다. 사람들은 공청(MATV)에 접속하여 동축케이블에 연결하고 TV로 디지털 위성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 CATV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는 형식승인 대상기기입니다. 또한, 기간망, 전송망의 분계점에 접속하여 동작가능하다면 형식승인 대상기기입니다.
2. 「컴퓨터에 연결되어 (USB, RS-232, DVI단자, PS-2 등) 데이터(제어신호 등 포함)를 받거나 보내게 되면 정보기기로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3. 전파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별표1]~[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개발업체에서 장비를 납품받아 발주처에 납품예정인 업체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형식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개발업체에서는 장비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장비이기 때문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은 장비는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전자파적합 인증번호는 CJS-SENTRY-40U(A) 이고 모델명은 SENTRY-40U입니다.

답변내용

문의하신 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가 아닙니다.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기자재
   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을 제외한다)
   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
3.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80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저의 구형 제품은 2006년 3월 17일에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번호 : ATB-ATB-500(A), 모델명 : ATB-500)
저의 납품 업체에서 1. 정보통신기기 전기안전 시험성적서 2. 정보통신기기 인증서
3.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납품할 제품은 구형과 다른 신형 제품으로 위 3가지 인증서류에 저의 제품이 모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신형제품은 구형 제품과 달리 안에 PC가 내장되어 홈네트워과 연동되는 제품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내용

문의하신 기기는 형식승인 대상기기가 아닙니다.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2. 기간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로서 기간통신망, 기간통신망 운용자 또는 기간통신망 이용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전기통신기자재
   가. 형식승인대상 전기통신기자재가 시스템인 경우 이와 함께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시스템이 없이 별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속물 또는 구성품을 제외한다)
   나. 종합정보통신망(ISDN)용 단말기기류
   다. 채널서비스유니트(CSU)에 직접 접속되는 디지털통신장치
3. 전송망의 분계점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기자재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정보통신부령 제180호)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FM Transmitter가 내장된 정보기기를 만들어 팔려면

mic 인증 중 어떤 분야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2005년에는 전자파적합으로만 받아도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지금은 만약 FM Transmitter가 내장된 정보기기를 만들어 팔려면
어떤 분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전자파적합 인증을 class A로 받은 제품을 집안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권고해도 상관없는지요? 뭐 권고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것을 방치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설명서에 사용자안내문(「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별표5]참조)을
포함해야 합니다.

일단 소비자가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품은 가정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저희 업체는 현재 공작기계의 공구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출해내는 시스템을 개발중입니다.
기존 센서와 센서모듈은 독일에서 수입을 하고 하고,
이러한 센서에서 얻은 데이타(케이블)을 통해 현재 개발중인 컨트롤러박스(신호터미널)로 와서 USB포트를 통해 컴퓨터 S/W로 오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컨트롤러박스 기계에서 출력신호를 두개를 받고, 또한 컴퓨터에서 처리된 알람신호를 기계로 입력시키는 장치인데

어떤 인증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컴퓨터에 연결되어 (USB, RS-232, DVI단자, PS-2 등) 데이터(제어신호 등 포함)를 받거나 보내게 되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MI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증신청/구비서류

인증면제규정

인증신청 구비서류

시험 및 기술규정

질의 1

Q&A(2007.4.9)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용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 종사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이미 무선형식등록을 받은 무선 LAN카드(IEEE802.11b/g/a)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저희 제품의 표준 슬롯 Mini-PCI에 장착 연결하여
무선LAN이 되는 산업용 컴퓨터를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MIC 인증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무선형식등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자파적합등록 인증만 받으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다시 무선형식등록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제조자가 인증받은 구성품을 이용하여 새로운 기기를 제조하였을 경우 기인증받은 부분에 대한 인증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인증시에 회로도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Q&A(2007.5.3)

다국적기업인 제조사 A사 제품에 대해 제조사의 한국법인 B가 미약전파무선설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번호: R-LPD1-05-0028
당사는 한국법인 B와는 별개로 A사 제품을 수입하려는데요, 이 경우 동일제품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동일제품에 대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동일한 서류와 신청과정을 그대로 반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동일제품이라도 수입자, 판매자가 다르면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동일제품을 다른 판매자가 인증을 받더라도 구비서류를 모두 갖춰 인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의 1

Q&A(2007.5.3)

저는 영상프로젝터 관계 회사에 다니는 직원으로, MIC인증을 받는 주체에 대한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상프로젝터는 MIC인증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대상제품의 경우 인증받아야 하는 주체는 제조, 수입 또는 판매자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회사가 수입원으로서 외국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하여 국내의 B 라는 업체에 전량 납품하고 그 업체(B)가 전량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MI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수입원인 A사가 MI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사인 B사만 인증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B사는 인증받은 자의 상호를 "B"로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문의한 결과 A는 수입원으로서 B사에 납품하니까, 그리고 B는 판매원이니까 양사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쁜 업무에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질의 1

Q&A(2007.4.12)

안녕하십니까?
PC용 전원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의 MIC인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은 각 용량별로 10여종입니다.
생산자는 중국소재 공장이며, 국내에 대리인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리인 말이 기존에 받아 놓은 인증이 있으니 동일기기로 신청만 하면 적은비용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국내에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네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데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고비용의 인증비용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인데요.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XX4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는 재품을 국내에 OEM으로 들여와 자사의 상표 'ZZ40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려 하는데 동일기기 신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컴퓨터용 파워라는게 외형규격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외형은 어느제품이나 다 동일합니다.
물론 색상은 다를 수 있겠지요.
즉, 회로만 동일하다면 동일기기로 신청할 수 있느냐이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현재 동일기기 인증은 없습니다.
별도로 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컴퓨터관련 주변기기/악세사리 등을 제조/수입판매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블루투스 관련제품(키보드/마우스/해드셋 등)을 수입/판매하려고 하는데, 국내 판매를 위하여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MIC인증만 받으면 되나요? 그리고, 간단한 절차나 비용등 관련내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전파를 송신하는 기기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무선 키보드, 마우스, 헤드셋은 형식등록 대상이고 PC에 연결되는 수신기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키보드, 수신기), (마우스, 수신기) 형태로 복합(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기기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기관(http://www.rrl.go.kr/approval/testing/status/list.jsp)과 시험을 진행하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비용 및 시험기간은 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인증수수료는 형식등록은 93,000원, 전자파적합등록은 74,500원입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지방세인 면허세를 해당 시·구청에 내셔야합니다.
인증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입니다.

질의 1

Q&A(2007.5.3)

안녕하세요.

MIC인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사항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사항 -

1. MIC인증을 받은 국내 제조모델을 납품받아 자사브랜드(OEM)로 판매를 할경우 별도로 MIC인증을 받아야 하나여?

2. MIC인증을 받은 A사 제품을 납품받아 B,C,D사가 판매를 할 경우 각각 B,C,D사 모두 별도로 MIC 인증을 받아야 하나여?(만약 받을경우 같은 제품에 같은 모델명, 같은 제조자의 인증번호만 여러개가 생기는게 맞나여??)

3. 귀사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을 다운받아 확인해본 결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경우 별도의 MI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용품안전인증의 경우 제조자 또는 수입자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제품에 경우는 별도의 MIC인증없이 판매처브랜드(OEM)로 판매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4. 마직막으로 변경신고 관련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HDD의 경우 동일제조사에 용량만 틀린경우(100G, 200G, 300G)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전기적인 특성이 변경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경우도 그럼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건가여?

답변내용

1. 자사브랜드로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2. 별도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B,C,D가 자사브랜드로 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 각각 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3.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면 「전파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면제대상이 되나, 형식승인, 형식등록 인증에 해당되는 제품은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4. 말씀하신 HDD의 경우 용량이 다른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적인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용량, 주파수, EMI 등의 특성이 동일함을 말합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MIC 인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 제조자가 MIC 신청을 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해외 신청인이 이미 인증 받은 모델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내 대리인이 변경이 되면 다음에 인증을 신청하실 때 변경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해외 제조자가 MIC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국내대리인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신고제도

◈ 관련법령 ◈

1 운영목적

❍ 제품의 기능향상에 따른 변경시 신규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인증번호 변경 없이 기술개발에 따른 제품의 성능향상을 도모

※ 법적근거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5항, 전파법 제46조제6항 및 제79조제1항

2 세부내용

❍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기술기준변경범위(지침 제8조제1항)	적용범위
♦ 회로의 변경이나 부품의 제거 · 대치 · 추가	♦ 형식승인의 경우 기간통신망 및 전원부에 한함
♦ 전기안전기준 1-5절, 1-6절, 2-9절 ♦ 기기외관 구조물, 인쇄회로기판 재질변경	♦ 형식승인의 경우에 한함
♦ 완제품으로 인증받은 기기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 제거 · 대체 · 추가	♦ 형식승인,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구성품 제거는 제외하며 무선기기는 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기술기준 변경과 동시에 모델명을 추가하는 경우	
♦ 형식등록기기중 전파흡수율 및 전자파적합등록 외형의 변경 ♦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기기중 10%이상의 외형 변경	

❍ 기술기준 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기술기준 외 변경범위(지침 제8조제2항)	적용범위
♦ 모델명 변경 및 추가(파생모델)	전 분야
♦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의 변경 및 추가	〃
♦ 인증받은 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

3 변경신고절차

❍ 변경신고 구비서류

- 기술기준과 관련된 변경의 경우 반드시 시험성적서 첨부하고 기술기준 외 변경의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
- 파생모델 추가의 경우 구조, 성능(기능), 외관 등 비교자료 첨부
- 제조자/제조국 변경의 경우 변경에 따른 약정서 등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신고시 유의사항>

- 기본모델의 변경은 불가(인증번호 부여체계와 상충)
- 제품의 BASE부분이 변경되거나 PCB기판 원형(외관 형태)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불가(신규기기로 신청)

  예) PC Main 보드의 Slot 형태 · 갯수 · 위치 · Clock의 변경,
- 기술기준과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파생모델번호를 추가로 부여

  예) PC의 하드, CPU변경, 구성품의 추가, 외형의 부분변경 등
- 무선기기는 전파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
- SW제어에 의한 제품 고유의 성능 ·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파생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신고(규칙 제제2조1항제13호 적용)

◈ 관련 Q&A ◈

질의 1 기술기준 외 변경의 신고방법

발 제	참여마당/신문고(2006.11.13)
질의요지	브랜드명이 변경된 경우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에 인증 받았던 PD4 모델의 표지 디자인 및 상품명을 교체하여 E BASIC 이란 브랜드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상품 브랜드는 My Flash 이었고, 수입원은 그대로입니다. 상품은 그대로이고 PD4 라는 제품명도 그대로 사용 예정이며 상품에 인쇄되는 브랜드명만 교체됩니다. 처음 PD4 제품을 인증 받을 때 My Flash 라는 상품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MIC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련질의>

-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의 모델명 추가절차(2006.3.14 Q&A)
-

답변내용

브랜드명이 변경되면 변경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기타사항 변경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학교방송용 제품의 인증(EMI, EMS)을 2006년 1월에 취득하여
ICL-2200이라는 모델(인증번호 : IMK-ICL-2200)로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변경요청에 의해 전원단의 2차측 다음단에
일부 회로를 추가하는 일부 개선을 하였습니다.
기능이나 외관구조, 규격(SPEC) 등의 변경은 전혀 없고 단지 정전시 오디오 출력의
레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위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현재 EK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전자파 연구원에서 변경과 관련하여 Safety 및
오디오, 비디오 IT관련 부분에 대한 EMC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번째로 위와 같이 인증을 득한제품의 일부의 변경이 있을경우 재시험이 꼭 필요한지...
두번째로는 이미 EK에서 관련 시험을 진행하는데 이 시험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입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중복 비용 및 시험기간으로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 하시어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인증을 득한 제품의 회로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변경으로 시험을 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K에서 관련 시험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대치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 1

Q&A(2007.5.3)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개발하고 MIC인증을 완료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바이어가 동일한 모델을 바이어 브랜드로 모델명을 변경하여 국내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의 바이어는 MIC관련 인증시험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를 할 계획이며, 당사의 고유 인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한지요?

답변내용

질의 1

Q&A(2007.4.18)

2007년 3월 15일 자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명과 상호는 국내업체 이름으로 받았는데, 해외 제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상호변경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받은 자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의 양도. 합병. 분할된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상호명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전파연구소 고시 제2007-22호)

개인회사인 경우는 “나“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인증

안녕하십니까?
현재 전기제품에 대한 MIC 인증제도에 관한 문의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이하 A라함)는 외국의 제조사(이하 B라 함)의 제품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미 그 제품에 대해 국내의 타회사(이하 C라 함)에서 MIC 인증을 득하였기에 그 제품에 대해 인증 내용을 이양 받으려 시도 하였습니다.
전파연구소측의 답변으로는 C사의 사업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 아이템에 대한 인증사항을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의 MIC인증이 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C사로 부터 양도양수계약, 위임 등 공급권한에 대해 양도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고 이미 시험을 끝내 시험성적서까지 다 나와 있는 제품을 수입 업체가 바뀐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요?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십시오.

<관련질의>
▪ A업체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OEM으로 B업체에서 판매할 경우(2006. 4./Q&A)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제8조(변경신고의 범위 등) ②항 3목 가.호에 따르면 인증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 또는 법인의 양도·합병·분할된 경우입니다. 본 조항은 인증서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따라서 A사의 경우 동일제품을 수입·판매하고자하는 경우 신규인증을 받아야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동일기기를 유통(수입·판매)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분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형식승인 받은 제품인데 PCB에는 전혀 변경이 없이 케이스(디자인때문)만 바꿀려고 합니다. 케이스의 재질일 일반 ABS입니다. 그렇게 바꾸었을 때 형식승인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인증서상의 인증의 종류가 형식승인인 경우는 외관 형태가 10%이상 변경이 되면 시험을 하여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령정보→인증및지정→정보통신기기인증을위한세부운영지침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회사는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한국지사입니다.
물론 인증은 해외제조사측에서 신규 인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메뉴얼상의 모델명을 한국향에 맞게 모두 수정을 해야 하는지요?
* 영문(각해외의 매뉴얼)의 모델명이 한국향에 맞게 동일하게 메뉴얼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혹시 법규에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지요?
전파연구소의 신청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외에 더 첨부된 내용이 있는지요?
1. 정보통신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설명서(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위 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제5조 ②항에 의해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문으로 된 매뉴얼에 한국향 모델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됩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형식등록과 관련하여 좀 복잡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용중에 있는 이동통신기지국용으로 디지털 채널카드를 개발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디지탈 채널카드는 디지탈 변복조 기능등을 수행하며 기존 운용중인 디지탈 채널카드에 대비하여 성능이 Upgrade 되었읍니다. 그러나 IF(RF)측으로 향하는 디지탈 I,Q 기저대역 신호는 기존과 동일하며 디지탈 채널카드 변경으로 인하여 RF 특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
1. 위와 같이 기지국의 RF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지국내의 일부 유니트(디지탈 채널카드)가 바뀌는 경우 신규로 형식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형식등록 변경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 형식등록이나 형식등록 변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2. 형식등록(신규 또는 변경)을 받아야 한다면,
운용중인 장비인 경우 시험장소를 전파연구소장이 지정하여 상온.상습에서 시험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운용중인 현장에서 시험이 가능하다면 형식등록 시험신청은 제조사가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지요?
3. 현재 운용중인 기지국 장비에 대해 과거 형식등록을 받은 제조사는 수년전에 부도가 나서 저희 회사에서 성능이 향상된 디지탈 채널카드를 개발하여 운용중인 장비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경우, 형식등록 변경이 가능한지요? 단, 기지국 장비 전체에 대한 제조 및 판매는 없고 오로지 디지탈 채널카드에 대해서만 제조 및 판매가 있습니다.
4. 운용중인 장비의 신규 형식등록이나 형식등록 변경 각각의 경우에 무선국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5. 마지막으로, 형식등록 변경시 변경사항이 전혀 없는 유니트들에 대해서도 형식등록 인증신청자료(회로도, 부품배치도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1. 인증받은 제품의 H/W 변경이 있으면 시험을 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인증자가 시험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3. 인증자가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4. 무선국 검사에 대해서는 설치장소의 관할 체신청에 문의
5. 회로도 , 부품배치도 등이 변경이 되었다면 시험성적서 및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지난달 외장형 무선모듈 제품에 대한 형식등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PCB의 패턴을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정되는 부분은 PC나 신용조회기의 RS-232 의 RX/TX line 입니다만 RF부분은 그대로 입니다. 이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형식등록 인증을 받은 제품의 PCB 패턴이 변경되면 처음 인증 받기 전에 시험을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시험을 한 다음 적합 받은 시험 성적서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령정보→인증 및 지정→정보통신기기인증을 위한 세부운영지침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Fax제품에 AC Adapter 추가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전 Q&A를 검색해보니 승인완료된 제품에서 악세사리로 사용된 AC Adapter 밴더가 추가된다면 기술기준 변경승인 범위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적합등록 시험을 다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유선통신에 대해서도 시험을 다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적자파적합 및 안전규격에 대해서만 시험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내용

변경 전,후의 전기적 사양이 다를 경우에는 전기통신, 전기안전, EMC 시험을 하시면 되고 변경전, 후의 전기적 사양이 같을 경우에는 EMC 시험만을 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홈오토메이션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한질문입니다. 홈오토메이션 인증을 받을시 구성품으로 900MHz 무선핸디를 구성품으로 하여 형식승인/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았습니다.
1) 만약, 핸디의 색상이 회색에서 흰색으로와 핸디에 표기된 로고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법규를 확인한 결과 이해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2) 코드없는전화기가 형식등록 및 형식승인으로 분류되기전(05년6월30일) 형식승인으로 포함되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연도가 2006년이라해서 개정된 법규를 적용하여 인증을 새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법규가 개정된 제품이라 해서 개정전 인증을 득하였지만 생산연도가 개정 이후라 하여 사후관리 및 불법제품으로 분류되는지, 정보통신기기 인증 규칙의 부칙 제4조(형식승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사후관리 및 불법인증제품에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3) 저희 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되어지는 900MHz 무선핸디(코드없는전화기)의 경우 단독으로 형식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함께 관련법규를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색상이 바뀌면서 로고가 변경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지요? 색상이 변경되어 모델명이 변경, 추가되었다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모델명 변경,추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지 색상만 변경되었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개정된 법은 신규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기나, 기 인증받은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적용이 됩니다.
3) 현재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전화기의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핸디만 따로 인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정보통신부고시 제2006-24호 제2조 참조)

질의 1

Q&A(2007.5.3)

안녕하세요..

거치대로 차에 장착하는 type 의 Car Navigation 모델인데요..

1. PC와 연결되는 통신 Port 는 하나두 없고 오직 SD Memory Card 를 껴서 데이타를 읽습니다.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2. FM Transmitter 기능이 있습니다. 형식등록을 받나요 ?
3. 적합등록과 형식등록 모두를 받아야 한다면, 인증번호를 각각 하나씩 모두 label에 표기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car 네비게이션도 종류가 많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EMC 대상기기는 정보기기로써(인증규칙 제2조에서 "데이타 및 통신메세지의 입력, 출력, 저장, 검색, 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V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로 정의되어 있음)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내장 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란 일반적으로 1. 1개 이상의 처리 장치와 주변 기기로 구성되며, 내부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받고,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실질적인 계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 2. 정보를 입력하여 그 정보를 정해진 과정대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기기. (구성 요소는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제어 장치이다) 입니다. 퍼스널컴퓨터 및 산업용, 서버, 터미널, 포터블, 판탑(PDA, PMP), 대, 중, 소형, 네트웍, 일체형 등이 컴퓨터류로 분류되어 있고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컴퓨터 주변기기가 아닌 컴퓨터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EMC인증을 득하여야 합니다. 2. . FM Transmitter 기능이 있으므로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3. 전자파적합등록과 형식등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번호는 하나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428-23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증표시방법

◈ 관련법령 ◈

1 인증표시의무의 법적근거

❍ **형식승인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4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 또는 진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인증표시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인증취소(법 제35조제1항제3호

⇨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간 당해기기에 대해 인증신청 불가

❍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전파법」 제46조제3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자파적합등록 : 제57조제2항**

②제4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6조제3항중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는 "전자파적합등록표시"로 보며, 제46조제6항의 "제45조 및 제47조의2"는 "제56조"로 본다.

⇨ 형식검정/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인증 표시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90조제3의2) 및 인증취소(법 제74조제1항제3호)

⇨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간 당해기기에 대해 인증신청 불가

2 세부표시방법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제7조제2항 [별표7]

[별표 7]

인 증 표 시 (제7조제2항관련)

1. 도안모형

인증번호 : AAA-BBBBBBBBBBBBB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MIC로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한다.

라.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인증번호 부여

구 분	내 용
AAA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
BBBBBBBBBBBBB (제품 식별부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

※ 주의사항

1. 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 아라비아 숫자 및 하이픈(-)을 혼용할 수 있다.

   예)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 제품모델명이 CDEF-7650일 경우 : A12-CDEF-7650

◈ 관련 Q&A ◈

질의 1

안녕하세요.
MIC 인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품군은 USB 제품이며 문의 내용은 현재 제품에 표기하는 MIC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에 대한 문의입니다. 제품에 MIC 인증 마크는 넣고 인증 번호를 제품 이외에 제품 BOX나 제품 설명서에 넣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내용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별표7] 인증표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형의 제품으로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아주 작은 소형으로 기구의 특성상 인쇄가 불가한 제품으로 이해)는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MIC로고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인증번호, 인증자 식별부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질의 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MIC식별부호는 등록하였고요.
AAA(식별부호)-?????-????? 식별부호 뒤쪽에 숫자/영문자로 제품의
모델명을 넣어서 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님 굳이 모델명이 아닌 숫자/영문자를 넣어도
상관 없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내용

인증번호 중 제품식별부호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로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모델명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14자리 이내로 영문,숫자 등을 포함하여 제품식별부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1

Q&A(2007.5.3)

안녕하세요..

거치대로 차에 장착하는 type 의 Car Navigation 모델인데요..

1. PC와 연결되는 통신 Port 는 하나두 없고 오직 SD Memory Card 를 껴서 데이타를 읽습니다.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나요?
2. FM Transmitter 기능이 있습니다. 형식등록을 받나요 ?
3. 적합등록과 형식등록 모두를 받아야 한다면, 인증번호를 각각 하나씩 모두 label에 표기해 주어야 하나요?

답변내용

1. Car Navigation 은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입니다.
2. FM Transmitter 기능이 있으므로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3. 전자파적합등록과 형식등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번호는 하나입니다.

질의 1

최근 저희회사가 과거에 판매 생산한 것도 동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대형 할인점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내용을 확인해본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형식승인 번호 EYE-EV-5930M(제조자: 아이즈비전)
동일한 제품 생산자> 형식승인 번호 IPH-EV-5930(제조자 아이폰)

포장지의 전면에 표기되는 부분은 EV-5930만 표기되며, 제품의 기능 및 디자인, 박스 전면의 디자인까지 동일합니다. (단, 판매회사의 명칭만 다름. 이전: 아이즈비전, 현재: 한창)

이러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적으로 형식승인 번호는 회사의 약명등이 들어가고, 이후 순차적인 씨리얼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다른 회사에서 유사 형식승인 번호로 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기존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 기능등의 100%도용이 해당 형식승인시에는 전혀 고려가 안되는지?

ps. 상기사항은 회사내부적으로 추가 확인중이며, 계약상 해석의 문제가 있어 거래처와 협의중인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행정적 처분이 계신경우에는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인증번호의 제품식별번호는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 당시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입니다. 그러므로 모델명 또는 제품식별부호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2. 인증전 서류 심사에서는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해 관련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제품의 도용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질의 1 Q&A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이미 인증은 받은 기기가
병행수입 또는 기타방법으로 타국에서 판매 되는 상품
을 국내에서 판매 했을경우 인증 스티커 없시 판매는
불법인지요.

또한 인증은 받았의나 제조국가는 미국이지만 실제
제조국가가 중국인 경우 또는 핵심 부품인 무선 칩셋
만 미국생산 조립 생산 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재품경우
에도 동인한 인증효과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품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LAN용)
무선랜 IEEE802.11b 입니다.

답변내용

병행수입되는 제품은 사실상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일 경우가 많으며 A/S도 되지 않습니다.인증받은 제품도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자는 형식승인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의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자파적합등록, 형식등록의 경우 전파법에 의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증에 대한 관리는 인증자가 해야하며 제조국이 달라질 경우 제조국 변경 및 추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의 1

Q&A(2007.5.3)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무선기기 형식등록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서에 기재된 기기의 명칭은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 기기의 명칭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대신에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표기해도 되는지요?

답변내용

라벨의 기기명칭은 인증받은 사항 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타사항

질의 1

외국에서 rc용으로 무선 송수신기를 사려고 합니다.

ebay에서 8접접을 무선제어 할수 있는 무선 송수신기를 사려고 합니다. 315MHZ 500미터까지 조정할수 있는 송수신기입니다. 국내에서 낚시용품 원격보트에 탑재하여 제품화하려고 합니다. 전파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형식승인이란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34달러에 오늘 결제를 이미 했습니다. 그네들하는 말로는 아시아에서는 주로 315MHZ 또는 435MHZ 가 쓰인다길래 구매결정을 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찾아 보았더니 311.0125, …, 311.1250(10 ch, 12.5㎑ interval)
Output Power : Max. 5mW 이면 무신고 즉 그냥써도 된다고 나와 있어 외국업체에 개조하여 보내줄수 있는지 물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답이 왔습니다.
"Please contact the officer to demand if UHF/HF 315MHz or 433MHz is available, normally 433MHz is always available all over the world."

아마도 311MHZ로 개조하는것은 어려운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http://www.e-madeinchn.com/Product.htm 에 들어 가면 해당 물품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물품은 tcp500-8 리모콘 과 rr8-m 릴레이입니다만....

시제품 만들어서 사업화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법규문제가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꼭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전파를 송신하는 기기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문의하신 기기는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용 주파수가 322㎒미만은 3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가 500 $\mu V/m$ 이하 (15 ㎒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pi/\lambda$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를 만족해야합니다.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 자료실 →무선기기(22번 방송 · 해상 · 항공 ·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및 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와 제조판매하는 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주는 제도로써 업무를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A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스캐너(세번부호 : 8471601040)와 LCD모니터(세번부호 : 8471602023)인데, 스캐너는 AC/DC Adapter를 사용하며, LCD모니터는 전원을 POS system에서 공급받으며 Audio Port도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파법에 의거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가요? 마지막으로 둘중에 아무거나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면제받는것인가요?
세번째질문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정보사무기기에서 비고란에 전파법 제57조 및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제4항 및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 전파법에 의해 지정받은 시험기관에서 해당시험을 받은 경우 해당시험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전자파적합등록검사를 받으면 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고 보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바쁘실텐데 여러가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컴퓨터에 연결되어 (USB, RS-232, DVI단자, PS-2 등) 데이터(제어신호 등 포함)를 받거나 보내게 되면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로 MIC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으면 MIC인증의 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기기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여부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득했을 때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면제조건 등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중 정보사무기기에서 비고란에는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기기류로서 시험·검사기관공인제도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전자파적합등록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1

Q&A(2007.3.30)

안녕하세요.

저희는 RTLS(실시간 위치 추적)관련 무선관련 기기를 국내에 도입해서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주파수 대역은 35~45KHz 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받아야만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322MHz이하의 주파수는 출력이 3m 측정거리에서 500㎶/m이하여야 사용가능합니다.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하시고 시험성적서, 설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www.emic.go.kr에 접속하셔서 인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의 1

안녕하세요.

휴대폰관련 MIC인증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3조와 4조에 나와있는것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MIC인증을 준비하고자 하지만 어떤항목을 테스트 하는지 몰라 애를먹고 있습니다.

혹시 테스트 항목과 그 spec이 나와있는 문서가 있는지요?

답변내용

「전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 제9조,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기관(http://www.rrl.go.kr/approval/testing/status/list.jsp)과 시험을 진행하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catv 증폭기 중에서 정보 통신기기 인증을 받아야하는
주파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일반 catv에서는 상.하향 주파수 범위가
5.75MHz ~ 870MHz로 알고 있는데요.
광대역 주파수 범위를 갖는 증폭기도 정보 통신기기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대역 주파수 범위는 상.하향 포함하여, 5.75MHz ~ 870MHz에 위성 주파수
범위인 950MHz ~ 2.3GHz의 범위를 갖는 증폭기를 말합니다.
위의 2개의 주파수 범위를 합성하여 1개의 전송로에 전송을 할 수 있는
증폭기가 있다면 그에대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답변내용

전화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CATV 구내전송증폭기 주파수대역은 상향 5.75~41.75(㎒), 하향 54~864(㎒)입니다. 기술기준을 만족해야 형식승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u-정책포커스→법령자료→고시→「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별표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Q&A(2007.4.3)

야구, 축구, 레이싱, 등에 사용하는 속도측정기 입니다. 수입해서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양인데 전파관리법에 저촉되는지? MIC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측정대역 : K-Band(24.150GHz ± 50MHz)
속도측정 정밀성 : ± 1.0 Km/h
속도측정 범위 : 8 ~ 320 Km/h
평균 측정거리 : 1,200 m
레이다 조절각도 : 12°
극초단파 출력 : 10 mV
최대 출력밀도 : 1mW/cm²
속도측정 시간 : 표전 차량을 겨냥 했을때 0.2초 이내 디스플레이
측정모드 : KPH, MPH 선택기능

답변내용

문의하신 기기가 다음에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전계강도
10㎓ 이상 150㎓ 미만	3.5f㎶/m 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지는 관할 체신청(예: 서울-서울체신청)에 문의 바랍니다.

국가간상호인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MIC인증 시 유선기기에 사용되는 RJ11을 꼭 MIC인증품을 사용해야 되는지요?
UL이나 CE/CB인증품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답변내용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사용하는 모듈러잭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입니다.
UL,CE, CB인증을 받으셨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시려면 MIC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질의 1

스포츠용품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에서 이미 CE마크를 획득한 수입제품과
국내에서 시제품 생산예정인 자체개발제품 대하여 해당하는 정확한 인증구분(요건)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심박수 측정용 가슴벨트(송신기)가 포함된
유산소운동용 디지털 손목시계(수신기) 세트
- 수입품으로 이미 CE마크 획득제품으로 자사브랜드로 판매예정
- 통신환경: 가슴벨트와 손목시계가 5kHz로 전자기장 유도방식에 의한 아날로그 통신
- 배터리: 가슴벨트와 손목시계 각각 3V CR2032 배터리 1개씩 사용
2.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삐삐 형태의 개인휴대용 심박수 중계기
- 자체개발 제품으로 시제품 생산 예정
- 심박수 측정용 가슴벨트(송신기)로부터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5kHz)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에 2.4GHz 주파수를 사용하여 PC연결용 수신기로 전송
- 배터리: AAA건전지 2개 사용
3.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PC연결용 무선 수신기
- 자체개발 제품으로 시제품 생산 예정
- PC의 USB포트에 연결되어 중계기로부터 발생하는 디지털 신호(2.4GHz)를 수신하
여 PC에 전달
- 안테나: 2.4GHz용 외장 무선안테나(기성품) 사용(SMA커넥터 연결)
- 배터리: 없음

답변내용

MIC인증대상기기는 CE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를 하시려면 MIC 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1,2: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

무선기기는 주파수, 출력, 용도 등이 해당 기술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전파연구소 홈페이지 → 자료실 →무선기기(22번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6조, 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이 되면 형식등록 인증 대상입니다.

3. 일명 수신기라 하더라도 송신기능이 있는 수신기는 형식등록 대상기기입니다.송신기능이 없는 PC연결용 수신기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질의 1

MIC 인증과 관련해서 인터넷 서핑중 다음과 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 MIC 인증이란? = 전기통신기본법 제 33조와 전파법 제 46조 및 제 57조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제도다.
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강제 시행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 산하의 전파연구소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세계 안전인증기관인 UL(미국&캐나다 안전인증)/FCC(미국 전자파 안전인증)/CE(유럽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단 이는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OEM으로 공급받아 수입사의 로고를 새로 부착할 때는 국내에서도 새롭게 인증받아야 한다.
.....2007-02-02 12:06:34 / 정효진 기자
기사제공 사이트 : http://www.betanews.net/bbs/read.html?num=361498&ad=299

여기에서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세계 안전인증기관인 UL(미국&캐나다 안전인증)/FCC(미국 전자파 안전인증)/CE(유럽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국내 MI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 하고자 합니다.
개인이 수십, 수백개의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자 할때 인증비용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사 내용중에 보면
"문제는 MIC 인증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최소 1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80~1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또 인증에 투입된 제품의 경우 파손으로 인해 다시 활용할 수 없게 된다."고 했는데 실제 총 인증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바쁘실테지만 답변 주시길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답변내용

MIC 인증대상기기인 제품이 UL, FCC, CE 등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하시려면 MIC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해야하며 시험비용은 지정시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수수료는 형식검정 :165,000원, 형식등록:93,000원, 형식승인:145,000원, 전자파적합등록:74,500원입니다.
인증서를 교부받기 전 지방세인 면허세를 시·구청 세무과에 내셔야합니다.